

영등포구의회
제12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3. 2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3. 19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·같은법 시행령 제정·시행(2006.1.1)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(안)에 따라 우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둠 (안 제5조 내지 제5조의5)
-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,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(안 제10조)
-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 (안 제11조)

관련법규
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·같은법 시행령』 : 2006.2.22 개 정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』 : 2006.6.26 개 정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준비중에 있음.

검토의견

- 2006.1.1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2007년 우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규모는 4억8천2백만원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3. 26.

보고자 : 이 남 식